|  |  |  |
| --- | --- | --- |
| **1.3.5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운수조례**  (“2004년 4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40호로 공포, 2012년 11월 9일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도로운수시장질서를 수호하고 도로운수안전을 보장하며 도로운수 관련 각측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도로운수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도로운수경영과 도로운수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마땅히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전관지칭의 도로운수경영에는 도로 여객운수경영(이하 여객운수경영이라 약칭함)과 도로화물운수경영(이하 화물운수경영이라 약칭함)을 포함한다. 도로운수 관련 업무에는 화물장의 경영, 자동차 보수업무의 경영, 자동차운전자 양성훈련업무를 포함한다.  **제3조** 도로운수경영 및 도로운수 관련업무에 종사하려면 마땅히 법에 의해 경영해야 하며 성실신용, 공정경쟁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도로운수관리는 마땅히 공평, 공정, 공개와 편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국가는 향진도로운수의 발전을 권장하며 아울러 필요한 조치를 통해 향진과 행정 촌의 통차율을 제고하여 광대한 농민의 생활과 생산수요를 만족시킨다.  **제6조** 국가는 도로운수기업의 규모화, 집약화 경영을 권장한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도로운수시장을 봉쇄하거나 독점해서는 안된다.  **제7조** 국무원교통주관부문은 전국 도로운수관리를 책임진다.  현 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은 당 행정구역내 도로운수관리업무를 조직하고 지도한다.  현급이상 도로운수관리기구는 도로운수관리업무의 구체적인 실시를 책임진다.  **제2장 도로운수 경영**  **제1절 여객운수**  **제8조** 여객운수경영의 종사를 신청하려면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경영업무에 필요하고 검사에 합격한 차량이 있어야 한다.  (2) 본 조례 제9조 규정의 조건에 부합하는 운전자가 있어야 한다.  (3) 건전한 안전생산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고정노선 운수경영에 종사하려면 또한 명확한 노선과 역 방안이 있어야한다.  **제9조** 여객운수경영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마땅히 하기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응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2) 연령이 60주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3년 내 중대이상 교통책임사고기록이 없어야 한다.  (4) 구를 설치한 시급 도로운수관리기구는 관련 법률법규, 자동차보수와 여객긴급구조에 대한 기본지식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제10조** 여객운수경영의 종사를 신청하려면 마땅히 하기 규정에 따라 신청을 제출하고 아울러 본 조례 제8조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현급 행정구역내의 여객운수경영에 종사하려면 현급 도로운수관리기구에 신청을 제출한다.  (2)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내에서 2개 현급 이상의 행정구역내 여객운수경영에 종사하려면 그 공동의 상1급 도로운수관리기구에 신청을 제출한다.  (3) 두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에서 여객운수경영에 종사하려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도로운수 관리기구에 신청을 제출한다.  전관규정에 의해 신청을 접수한 도로운수관리기구는 마땅히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내 심사를 완료하고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해야 한다. 허가할 경우, 신청인에게 도로운수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아울러 신청인이 운수에 사용할 차량에 차량운수 영업증을 발급해야 한다. 허가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두개 이상의 성, 차지구, 직할시 행정구역내에서의 여객운수경영 종사신청에 대해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도로운수관리기구는 본조 제2관 규정에 의해 도로운수경영허가증 발급 전 마땅히 도로운수 목적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도로운수관리기구와 협상해야 한다. 협상이 안되면 마땅히 국무원교통주관부문에 보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여객운수경영자는 마땅히 도로운수경영허가증을 소지하고 법에 의해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관련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제11조** 도로운수경영허가증을 취득한 여객운수경영자가 운영노선을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땅히 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제12조** 현급이상 도로운수관리기구는 여객운수신청에 대한 심사 실시시, 마땅히 여객운수시장의 공수상황, 보편서비스와 편의제공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동일노선에 3개 이상의 신청인이 있는 경우, 입찰형식을 통해 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제13조** 현급 이상의 도로운수관리기구는 마땅히 여객운수시장의 공수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14조** 여객운수노선의 경영기한은 4년에서 8년으로 한다. 경영기한이 만료되여 여객운수노선경영허가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여객운수경영자가 여객운수경영을 중지할 경우, 마땅히 중지전 30일내 원 허가기관에 고지해야 한다.  **제16조** 여객운수경영자는 마땅히 여객에게 양호한 승차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차량의 청결, 위생을 유지하고 아울러 필요한 조치를 통해 운수과정중 여객의 인신, 재산안전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제17조** 여객은 마땅히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해야 하며 승차질서를 준수하고 문명위생을 지키며 국가규정의 위험물품 및 기타의 휴대를 금지하는 물품을 가지고 승차해서는 안된다.  **제18조** 고정노선 여객운수경영자는 도로운수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후 마땅히 연속적인 운수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사사로이 고정노선운수를 잠시 정지하거나 중지 또는 양도해서는 안된다.  **제19조** 차를 대절하여 여객운수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약정된 출발지, 목적지와 노선에 따라 운수해야 한다.  관광운수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관광지 관광노선에 따라 운수해야 한다.  **제20조** 여객운수경영자는 여객을 강박하여 승차시켜서는 안되며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거나 사기공갈을 쳐서는 안되며 사사로이 운수차량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제2절 화물운수**  **제21조** 화물운수경영의 종사를 신청하려면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경영업무에 필요한, 검사에 합격한 차량이 있어야 한다.  (2) 본 조례 제23조 규정의 조건에 부합하는 운전자가 있어야 한다.  (3) 건전한 안전생산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제22조** 화물운수 경영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마땅히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2) 연령이 60주세를 초과하지 않는다.  (3) 구를 설치한 시급 도로운수관리기구에서 주관하는 화물운수 관련 법률 법규, 자동차수리와 화물운수 적재보관 기본지식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제23조** 위험화물의 운수경영을 신청하려면 또한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대 이상의 검사에 합격한 위험물의 운수 전용 차량,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자격증을 취득한 운전자, 하역관리요원, 호송요원이 있어야 한다.  (3) 위험화물운수 전용차량에 필요한 통신도구를 배비해야 한다.  (4) 건전한 안전생산관리제도가 있어야한다.  **제24조** 화물운수경영 종사를 신청하려면 마땅히 하기 규정에 따라 신청을 제출하고 아울러 본 조례 제22조, 제24조 규정의 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1) 위험화물운수 경영이외의 화물운수경영에 종사하려면 현급 도로운수관리 기구에 신청을 제출한다.  (2) 위험화물운수경영에 종사하려면 구를 설치한 시급 도로운수관리기구에 신청을제출한다.  전관규정에 의해 신청을 접수한 도로운수관리기구는 마땅히 신청접수일로부터 20일내 심사를 완료하고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해야한다. 허가할 경우, 신청인에게 도로운수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아울러 신청인이 운수에 사용할 차량에 운수영업증을 발급해야 한다. 허가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화물운수 경영자는 마땅히 도로운수경영허가증을 소지하고 법에 의해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관련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제25조** 화물운수경영자는 법률, 행정법규에서 운수를 금지하는 화물을 운수해서는 안된다.  법률, 행정법규에 관련 수속을 한 후 운수할 수 있다고 규정된 화물에 대해 화물운수 경영자는 마땅히 관련 수속을 검사확인해야 한다.  **제26조** 국가는 화물운수 경영자가 밀폐방식으로 화물을 운수함으로서 환경위생과 화물운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권장한다.  화물운수경영자는 마땅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 화물이 차에서 떨어지거나 날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위험화물 운수 시에는 마땅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 위험화물의 연소, 폭발, 방사, 누설을 방지해야 한다.  **제27조** 위험화물 운수 시, 마땅히 필요한 호송요원을 배비하여 위험화물을 감독관리하며 또한 뚜렷한 위험화물운수표지를 걸어야 한다.  위험화물 탁송시에는 마땅히 화물운수경영자에게 위험화물의 명칭, 성질, 응급처치방법 등의 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아울러 엄격하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포장하고 뚜렷한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제3절 여객운수와 화물운수에 공동히 적용되는 규정**  **제28조** 여객운수경영자, 화물운수경영자는 마땅히 종업원의 안전교육, 직업윤리도덕교육을 강화하여 도로운수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도로운수종업원은 도로운수조작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작업해서는 안된다. 운전자는 연속 운전시간이 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29조** 여객운수차량, 화물운수차량을 개장하는 기업은 마땅히 국가규정에 따라 정원수 또는 적재량을 정해야 하며 정원수 또는 적재량을 많이 표기하거나 적게 표기하는것을 엄금한다.  여객운수경영자, 화물운수경영자는 마땅히 국가규정표준에 부합하는 차량을 사용하여 도로운수경영에 종사해야 한다.  **제30조** 여객운수경영자, 화물운수경영자는 마땅히 차량에 대한 보수와 검사를 강화하고 차량이 국가규정의 기술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폐기 처분된 차량이나 사사로이 개장했거나 또는 기타의 국가 규정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을 사용하여 도로운수경영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제31조** 여객운수경영자, 화물운수경영자는 마땅히 교통 사고, 자연재해 및 기타의 돌발사건 관련 도로운수 응급조치 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응급조치방안은 마땅히 보고절차, 응급지휘, 응급차량과 설비의 비축 및 처치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32조** 교통사고, 자연재해 및 기타 돌발사건이 발생하면 여객운수경영자와 화물운수경영자는 마땅히 현급이상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문의 통일배차,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제33조** 도로운수차량은 마땅히 차량영업 운수증을 차와 함께 휴대해야 하며 양도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  **제34조** 도로운수차량이 여객을 운수할 경우 정해진 정원수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규정을 위반하여 화물을 적재해서는 안된다. 화물을 운수할 경우 여객을 운수해서는 안되며 운수하는 화물은 정해진 적재량에 부합해야 하며 초과 적재해서는 안된다. 화물의 길이, 너비, 높이는 적재요구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전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안기관교통관리부문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운수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제35조** 여객운수경영자, 위험화물운수경영자는 마땅히 여객 또는 위험화물을 위해 운수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3장 도로운수 관련 업무**  **제36조** 도로운수장 경영을 신청할 경우에는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검수에 합격한 운수장이 있어야 한다.  (2) 필요한 전문요원과 관리요원이 있어야 한다.  (3) 필요한 설비, 시설이 있어야 한다.  (4) 건전한 업무조작규범과 안전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제37조** 자동차보수 업무 경영을 신청할 경우에는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필요한 자동차수리장이 있어야 한다.  (2) 필요한 설비, 시설과 기술요원이 있어야 한다.  (3) 건전한 자동차수리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4) 필요한 환경보호제도가 있어야 한다.  **제38조** 자동차운전자양성훈련업무에 종사하려면 신청시,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전한 훈련기구와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2) 훈련업무에 필요한 교사, 관리요원이 있어야 한다.  (3) 필요한 교학 차량과 기타의 교학시설, 설비, 장소가 있어야 한다.  **제39조** 도로운수장 경영, 자동차보수와 자동차운전자양성 훈련업무에 종사하려면 신청 시, 마땅히 소재지 현급 도로운수기구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본 조례 제37조, 제38조, 제39조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자료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 현급 도로운수 관리기구는 마땅히 신청수리일로부터 15일내 심사를 완료하고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해야 하며 아울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도로운수장 경영자, 자동차보수 경영자와 자동차운전자 양성 훈련기구는 마땅히 허가증을 소지하고 법에 의해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관련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제40조** 도로운수장경영자는 마땅히 운수장을 나가는 차량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무허가경영의 차량이 운수장에 들어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것을 금지하고 초과적재차량 또는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은 차량이 운수장을 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도로운수장 경영자는 마땅히 운수장을 사용하는 여객운수경영자와 화물운수경영자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운수차량이 운수장에 들어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된다.  도로운수장경영자는 마땅히 여객과 화물주에게 안전, 편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장의 위생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운수장의 용도와 서비스기능을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제41조** 도로운수장경영자는 마땅히 여객운수경영자에게 합리적인 운행회수를 안배해야 한다. 운수노선, 시발역과 종착역, 중간통과 정차역, 운행회수, 시발시간, 차표가격을 공개하고 차량의 운수장 진입과 발차를 안배하며 여객을 소통시키고 상 하차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도로운수장경영자는 마땅히 승차권 구입, 대기실, 수하물의 기탁과 탁송 등의 서비스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정해진 정원수에 따라 매표하고 아울러 위험물을 휴대한 승객이 운수장에 들어와 승차하지 못하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2조** 도로화물운수장경영자는 마땅히 국무원교통주관부문이 규정한 업무조작규범에 따라 화물을 하역, 저장, 보관해야 한다.  **제43조** 자동차보수경영자는 마땅히 국가의 관련 기술규범에 따라 자동차를 수리하고 그 질을 보장하며 가짜 저질의 부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자동차보수경영자는 마땅히 자동차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수리 비용 표준을 공개하고 합리하게 비용을 수취해야 한다.  **제44조** 자동차보수업무 경영자가 자동차에 대해 2급 보수, 세트수리 또는 차 전체를 수리할 경우, 마땅히 보수 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경우, 보수품질 검사요원은 마땅히 자동차보수합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자동차보수에 대해 품질보증기한 제도를 실시한다. 품질보증기내 보수질의 원인으로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자동차보수경영자는 마땅히 무상으로 재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자동차보수품질보증기한 제도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교통주관부문이 제정한다.  **제45조** 자동차보수경영자는 이미 폐기 처분된 자동차를 수리해서는 안되며 사사로이 자동차를 개장해서는 안된다.  **제46조** 자동차운전자양성훈련기관은 마땅히 국무원교통주관부문이 규정한 교학 요강에 의해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훈련이 완료되면 마땅히 훈련참가자에게 훈련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장 국제도로운수**  **제47조** 국무원교통주관부문은 마땅히 적시에 중국정부와 관련 국가 정부가 체결한 쌍 변 또는 다변 도로운수협정에서 확정한국제도로운수노선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48조** 국제도로운수경영에 종사하려면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조례 제10조,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로운수경영허가증을 취득한 기업법인  (2) 만 3년의 국내 도로운수경영경력이 있어야 하며 아울어 중대이상의 도로교통 책임사고를 내지 않은 자  **제49조** 국제도로운수종사를 신청하려면 마땅히 성, 자치구, 직할시 도로운수 관리기구에 신청을 제출하고 아울러 본 조례 제49조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도로운수관리기구는 마땅히 신청접수일로부터 20일내 심사를 완료하고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해야한다. 허가할 경우, 마땅히 국무원교통주관부문에 보고하고 등록하며 허가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국제도로운수경영자는 마땅히 허가문건을 소지하고 법에 의해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제50조** 중국국제도로운수경영자는 마땅히 운수에 투입되는 차량의 현저한 위치에 중국적 식별표지를 표기해야 한다.  외국 국제도로운수경영자의 차량이 중국내에서 운수할 경우, 마땅히 본국 국적식별표지를 표기하고, 아울러 규정된 운수노선을 따라야 하며 사사로이 운수노선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시발역과 종착역이 모두 중국내에 있는 도로운수경영을 해서는 안된다.  **제51조** 항구에 설립된 국제도로운수관리기구는 마땅히 항구를 드나드는 국제도로운수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52조** 국제도로운수경영자는 국무원교통주관부문의 허가를 받아 법에 의해 중국내에 상주 대표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상주대표기구는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5장 집법 감독**  **제53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은 마땅히 도로운수 관리기구의 도로운수 관리업무 실시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54조** 도로운수관리기구는 마땅히 집법대오 건설을 강화하여 그 업무요원들의 법제, 업무소양을 제고시켜야 한다.  도로운수관리기구의 업무요원은 법제교육과 도로운수관리 업무훈련, 평가를 접수해야 하며, 불합격자는 직무집행에 임할 수 없다.  **제55조** 상급도로운수관리기구는 마땅히 하급 도로운수관리기구의 집법 활동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도로운수관리기구는 마땅히 건전한 내부감독관리제도를 건립하여 그 업무요원의 집법 상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56조** 도로운수관리기구 및 그 업무요원은 직무집행 시 마땅히 사회와 대중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접수해야 한다.  **제57조** 도로운수관리기구는 마땅히 도로운수 신고제도를 건립하여 신고전화, 통신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공개해야 한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이나를 막론하고 도로운수관리기구 업무요원의 직권 남용행위나 사사로운 정에 매여 폐단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신고할 권리를 가진다. 교통주관부문, 도로운수관리기구 및 기타의 관련 부분은 신고를 받은 후 마땅히 법에 의해 적시에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58조** 도로운수관리기구의 업무요원은 마땅히 직책권한과 절차에 따라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함부로 단속하거나 함부로 비용을 수취하거나 함부로 벌금해서는 안된다.  도로운수관리기구의 업무요원은 마땅히 도로운수 및 관련 업무 경영장소, 여객 화물의 집산지에서 중점적으로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도로운수관리기구의 업무요원은 도로길목에서 감독검사 실시 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도로운수차량을 마음대로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제59조** 도로운수관리기구의 업무요원은 감독검사 실시 시, 마땅히 2명이상의 요원이 동참해야 하며 아울러 당사자에게 집법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60조** 도로운수관리기구의 업무요원은 감독검사 실시 시, 관련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상황을 요해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사열, 복사할 수 있다. 단, 피 조사 단체와 개인의 상업비밀을 지켜야 한다.  감독검사를 받은 단체와 개인은 마땅히 법에 의해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접수해야 하며 여실하게 관련자료 또는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제61조** 도로운수관리기구의 업무요원은 도로운수감독검사과정에서 차량의 초과적재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제지시켜야 하며 아울러 상응한 조치를 취해 여객이 다른 차량을 환승할 수 있게 하거나 화물을 강제 하역해야 한다.  **제62조** 도로운수 관리기구의 업무요원이 도로운수 감독 검사 과정에서 차량영업 운수증이 없고 또한 당장에서 기타의 유효 증명을 제공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 일시적인 억류조치를 취한 경우, 타당하게 보관하고, 사용해서는 안되며 보관비용을 수취하거나 변상적으로 보관비용을 수취해서는 안된다.  **제6장 법률책임**  **제63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도로운수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사사로이 도로운수경영에 종사한 경우, 현급이상 도로운수관리기구는 경영정지를 명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압수하며 위법소득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4조** 본 조례 제9조, 제23조 규정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인원이 도로운수경영차량을 운전한 경우, 현급이상 도로운수 관리기구는 시정을 명하며 2백원 이상 2천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5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사사로이 도로운수장경영, 자동차보수업무경영, 자동차운전자 양성훈련에 종사한 경우, 현급이상 도로운수관리기구는 경영정지를 명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압수하며 위법소득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6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여객운수 경영자, 화물운수 경영자, 도로운수 관련 업무경영자가 도로운수허가증명을 불법으로 양도, 임대한 경우, 현급이상 도로운수관리기구는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관련 증명을 회수하며 2천원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압수한다.  **제67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여객운수경영자, 위험화물운수 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운수이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현급이상 도로운수관리기구는 시한부보험가입을 명한다.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 허가기관에서 도로운수경영허가증을 회수한다.  **제68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여객운수 경영자, 화물운수 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차량영업 운수증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현급이상 도로운수관리기구는 시정을 명하며 경고 처분하거나 또는 20원 이상 2백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9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여객운수경영자, 화물운수경영자가 하기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현급이상 도로운수 관리기구는 시정을 명하며 1천원이상 3천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원 허가기관에서 도로운수경영허가증을 회수한다.  (1) 허가 받은 역에 정차하지 않거나 규정된 노선, 공개한 운행회수에 따라 운행하지 않은 경우  (2) 강제적으로 여객, 화물을 모집한 경우  (3) 여객운수도중 사사로이 운수차량을 변경하거나 여객을 타인에게 넘겨 운수한 경우  (4) 원 허가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사사로이 여객운수경영을 중지한 경우  (5) 필요한 조치를 취해 화물이 차에서 떨어지거나 날리는 것 등을 방지하지 않은 경우  **제70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여객운수경영자, 화물운수 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운수차량을 보수, 검사하지 않은 경우, 현급이상 도로운수 관리기구는 시정을 명하며 1천원이상 5천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여객운수경영자, 화물운수 경영자가 사사로이 이미 차량영업 운수증을 취득한 차량을 개장한 경우, 현급이상 도로운수 관리기구는 시정을 명하며 5천원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1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도로운수장경영자가 무허가경영의 차량을 운수장에 진입시켜 경영활동에 종사하게 했거나 초과적재차량,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은 차량이 운수장을 빠져나가게 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운수차량이 운수장에 진입해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현급이상 도로운수관리기구는 시정을 명하며 1만원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도로운수장경영자가 사사로이 도로운수장의 용도와 서비스기능을 개변한 경우, 또는 도로운수노선, 시발역과 종착역, 중간통과 정차역, 운행회수, 시발시간, 차표가격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현급이상 도로운수 관리기구는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천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압수한다.  **제72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보수경영자가 가짜 저질의 부품을 자동차보수에 사용했거나 이미 폐기 처분된 자동차를 수리했거나 또는 사사로이 자동차를 개장한 경우, 현급이상 도로운수관리기구는 시정을 명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압수하고 위법소득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만원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가짜 저질의 부품 및 폐기처분의 차량을 압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원 허가기관에서 경영허가증을 회수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3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보수경영자가 가짜 자동차보수합격증을 발급한 경우, 현급이상 도로운수관리기구는 시정을 명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압수하고 위법소득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원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원 허가기관이 경영허가증을 회수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4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운전자 양성훈련기관이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했거나 훈련수료증 발급시 비리를 저지른 경우, 현급이상 도로운수 관리기구는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 허가기관에서 경영허가증을 회수한다.  **제75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외국국제도로운수경영자가 규정된 노선에 따라 운수하지 않고 사사로이 중국 내에서 도로운수에 종사했거나 또는 국적식별표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도로운수 관리기구는 운수정지를 명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압수하고 위법소득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이상 6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6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도로운수관리기구의 업무요원이 하기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가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본 조례규정의 조건, 절차와 기한에 따라 행정허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도로운수경영 및 도로운수 관련 업무에 참여 또는 변상적으로 참여한 경우  (3)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적시에 조사 처리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을 위반하고 정상운행의 도로운수차량을 막거나 검사한 경우  (5) 운수차량, 영업 운수증을 위법 억류한 경우  (6) 타인의 재물을 요구, 수수하거나 기타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  (7) 기타의 위법행위  **제7장 부 칙**  **제77조**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간의 도로운수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78조** 외상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중외합자, 중외합작, 독자형식으로 도로운수경영 및 도로운수 관련 업무에 투자할 수 있다.  **제79조** 비 경영성의 위험화물운수에 종사할 경우, 마땅히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80조** 도로운수 관리기구가 본 조례에 따라 경영허가증과 차량영업 운수증을 발급할 경우, 工本費(영업운수증 제작에 소요된 원가비용을 말함- 역자주)를 수취할 수 있다. 工本費의 구체적인 표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부문, 가격주관부문이 동급 교통주관부문과의 회동으로 확정한다.  **제81조** 택시회사와 도시 버스회사에 대한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별도 규정한다.  **제82조** 본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  （2004年4月3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06号公布；根据2012年11月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维护道路运输市场秩序，保障道路运输安全，保护道路运输有关各方当事人的合法权益，促进道路运输业的健康发展，制定本条例。  **第二条**从事道路运输经营以及道路运输相关业务的，应当遵守本条例。  　 前款所称道路运输经营包括道路旅客运输经营（以下简称客运经营）和道路货物运输经营（以下简称货运经营）；道路运输相关业务包括站（场）经营、机动车维修经营、机动车驾驶员培训。  **第三条**　从事道路运输经营以及道路运输相关业务，应当依法经营，诚实信用，公平竞争。  **第四条**　道路运输管理，应当公平、公正、公开和便民。  **第五条**　国家鼓励发展乡村道路运输，并采取必要的措施提高乡镇和行政村的通班车率，满足广大农民的生活和生产需要。  **第六条**　国家鼓励道路运输企业实行规模化、集约化经营。任何单位和个人不得封锁或者垄断道路运输市场。  **第七条**　国务院交通主管部门主管全国道路运输管理工作。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负责组织领导本行政区域的道路运输管理工作。  　 县级以上道路运输管理机构负责具体实施道路运输管理工作。    **第二章　道路运输经营**  **第一节　客　运**  **第八条**　申请从事客运经营的，应当具备下列条件：  　 （一）有与其经营业务相适应并经检测合格的车辆；  　 （二）有符合本条例第九条规定条件的驾驶人员；  　 （三）有健全的安全生产管理制度。  　 申请从事班线客运经营的，还应当有明确的线路和站点方案。  **第九条**从事客运经营的驾驶人员，应当符合下列条件：  　 （一）取得相应的机动车驾驶证；  　 （二）年龄不超过60周岁；  　 （三）3年内无重大以上交通责任事故记录；  　 （四）经设区的市级道路运输管理机构对有关客运法律法规、机动车维修和旅客急救基本知识考试合格。  **第十条**　申请从事客运经营的，应当按照下列规定提出申请并提交符合本条例第八条规定条件的相关材料：  　 （一）从事县级行政区域内客运经营的，向县级道路运输管理机构提出申请；  　 （二）从事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内跨2个县级以上行政区域客运经营的，向其共同的上一级道路运输管理机构提出申请；  　 （三）从事跨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客运经营的，向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道路运输管理机构提出申请。  　 依照前款规定收到申请的道路运输管理机构，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审查完毕，作出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予以许可的，向申请人颁发道路运输经营许可证，并向申请人投入运输的车辆配发车辆营运证；不予许可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对从事跨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客运经营的申请，有关省、自治区、直辖市道路运输管理机构依照本条第二款规定颁发道路运输经营许可证前，应当与运输线路目的地的省、自治区、直辖市道路运输管理机构协商；协商不成的，应当报国务院交通主管部门决定。  　 客运经营者应当持道路运输经营许可证依法向工商行政管理机关办理有关登记手续。  **第十一条**　取得道路运输经营许可证的客运经营者，需要增加客运班线的，应当依照本条例第十条的规定办理有关手续。  **第十二条**　县级以上道路运输管理机构在审查客运申请时，应当考虑客运市场的供求状况、普遍服务和方便群众等因素。  　 同一线路有3个以上申请人时，可以通过招标的形式作出许可决定。  **第十三条**　县级以上道路运输管理机构应当定期公布客运市场供求状况。  **第十四条**　客运班线的经营期限为4年到8年。经营期限届满需要延续客运班线经营许可的，应当重新提出申请。  **第十五条**　客运经营者需要终止客运经营的，应当在终止前30日内告知原许可机关。  **第十六条**　客运经营者应当为旅客提供良好的乘车环境，保持车辆清洁、卫生，并采取必要的措施防止在运输过程中发生侵害旅客人身、财产安全的违法行为。  **第十七条**　旅客应当持有效客票乘车，遵守乘车秩序，讲究文明卫生，不得携带国家规定的危险物品及其他禁止携带的物品乘车。  **第十八条**　班线客运经营者取得道路运输经营许可证后，应当向公众连续提供运输服务，不得擅自暂停、终止或者转让班线运输。  **第十九条**　从事包车客运的，应当按照约定的起始地、目的地和线路运输。  　 从事旅游客运的，应当在旅游区域按照旅游线路运输。  **第二十条**　客运经营者不得强迫旅客乘车，不得甩客、敲诈旅客；不得擅自更换运输车辆。  **第二节　货　运**  **第二十一条**　申请从事货运经营的，应当具备下列条件：  　 （一）有与其经营业务相适应并经检测合格的车辆；  　 （二）有符合本条例第二十三条规定条件的驾驶人员；  　 （三）有健全的安全生产管理制度。  **第二十二条**　从事货运经营的驾驶人员，应当符合下列条件：  　 （一）取得相应的机动车驾驶证；  　 （二）年龄不超过60周岁；  　 （三）经设区的市级道路运输管理机构对有关货运法律法规、机动车维修和货物装载保管基本知识考试合格。  **第二十三条**　申请从事危险货物运输经营的，还应当具备下列条件：  　 （一）有5辆以上经检测合格的危险货物运输专用车辆、设备；  　 （二）有经所在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考试合格，取得上岗资格证的驾驶人员、装卸管理人员、押运人员；  　 （三）危险货物运输专用车辆配有必要的通讯工具；  　 （四）有健全的安全生产管理制度。  **第二十四条**　申请从事货运经营的，应当按照下列规定提出申请并分别提交符合本条例第二十二条、第二十四条规定条件的相关材料：  　 （一）从事危险货物运输经营以外的货运经营的，向县级道路运输管理机构提出申请；  　 （二）从事危险货物运输经营的，向设区的市级道路运输管理机构提出申请。  依照前款规定收到申请的道路运输管理机构，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审查完毕，作出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予以许可的，向申请人颁发道路运输经营许可证，并向申请人投入运输的车辆配发车辆营运证；不予许可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货运经营者应当持道路运输经营许可证依法向工商行政管理机关办理有关登记手续。  **第二十五条**　货运经营者不得运输法律、行政法规禁止运输的货物。  　 法律、行政法规规定必须办理有关手续后方可运输的货物，货运经营者应当查验有关手续。  **第二十六条**　国家鼓励货运经营者实行封闭式运输，保证环境卫生和货物运输安全。  　 货运经营者应当采取必要措施，防止货物脱落、扬撒等。  　 运输危险货物应当采取必要措施，防止危险货物燃烧、爆炸、辐射、泄漏等。  **第二十七条**　运输危险货物应当配备必要的押运人员，保证危险货物处于押运人员的监管之下，并悬挂明显的危险货物运输标志。  　 托运危险货物的，应当向货运经营者说明危险货物的品名、性质、应急处置方法等情况，并严格按照国家有关规定包装，设置明显标志。    **第三节　客运和货运的共同规定**  **第二十八条**　客运经营者、货运经营者应当加强对从业人员的安全教育、职业道德教育，确保道路运输安全。  　 道路运输从业人员应当遵守道路运输操作规程，不得违章作业。驾驶人员连续驾驶时间不得超过4个小时。  **第二十九条**　生产（改装）客运车辆、货运车辆的企业应当按照国家规定标定车辆的核定人数或者载重量，严禁多标或者少标车辆的核定人数或者载重量。  　 客运经营者、货运经营者应当使用符合国家规定标准的车辆从事道路运输经营。  **第三十条**　客运经营者、货运经营者应当加强对车辆的维护和检测，确保车辆符合国家规定的技术标准；不得使用报废的、擅自改装的和其他不符合国家规定的车辆从事道路运输经营。  **第三十一条**　客运经营者、货运经营者应当制定有关交通事故、自然灾害以及其他突发事件的道路运输应急预案。应急预案应当包括报告程序、应急指挥、应急车辆和设备的储备以及处置措施等内容。  **第三十二条**　发生交通事故、自然灾害以及其他突发事件，客运经营者和货运经营者应当服从县级以上人民政府或者有关部门的统一调度、指挥。  **第三十三条**　道路运输车辆应当随车携带车辆营运证，不得转让、出租。  **第三十四条**　道路运输车辆运输旅客的，不得超过核定的人数，不得违反规定载货；运输货物的，不得运输旅客，运输的货物应当符合核定的载重量，严禁超载；载物的长、宽、高不得违反装载要求。  　 违反前款规定的，由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的有关规定进行处罚。  **第三十五条**　客运经营者、危险货物运输经营者应当分别为旅客或者危险货物投保承运人责任险。    **第三章　道路运输相关业务**  **第三十六条**　申请从事道路运输站（场）经营的，应当具备下列条件：  　 （一）有经验收合格的运输站（场）；  　 （二）有相应的专业人员和管理人员；  　 （三）有相应的设备、设施；  　 （四）有健全的业务操作规程和安全管理制度。  **第三十七条**　申请从事机动车维修经营的，应当具备下列条件：  　 （一）有相应的机动车维修场地；  　 （二）有必要的设备、设施和技术人员；  　 （三）有健全的机动车维修管理制度；  　 （四）有必要的环境保护措施。  **第三十八条**　申请从事机动车驾驶员培训的，应当具备下列条件：  　 （一）有健全的培训机构和管理制度；  　 （二）有与培训业务相适应的教学人员、管理人员；  　 （三）有必要的教学车辆和其他教学设施、设备、场地。  **第三十九条**　申请从事道路运输站（场）经营、机动车维修经营和机动车驾驶员培训业务的，应当向所在地县级道路运输管理机构提出申请，并分别附送符合本条例第三十七条、第三十八条、第三十九条规定条件的相关材料。县级道路运输管理机构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15日内审查完毕，作出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并书面通知申请人。  　 道路运输站（场）经营者、机动车维修经营者和机动车驾驶员培训机构，应当持许可证明依法向工商行政管理机关办理有关登记手续。  **第四十条**　道路运输站（场）经营者应当对出站的车辆进行安全检查，禁止无证经营的车辆进站从事经营活动，防止超载车辆或者未经安全检查的车辆出站。  　 道路运输站（场）经营者应当公平对待使用站（场）的客运经营者和货运经营者，无正当理由不得拒绝道路运输车辆进站从事经营活动。  　 道路运输站（场）经营者应当向旅客和货主提供安全、便捷、优质的服务；保持站（场）卫生、清洁；不得随意改变站（场）用途和服务功能。  **第四十一条**　道路旅客运输站（场）经营者应当为客运经营者合理安排班次，公布其运输线路、起止经停站点、运输班次、始发时间、票价，调度车辆进站、发车，疏导旅客，维持上下车秩序。  　 道路旅客运输站（场）经营者应当设置旅客购票、候车、行李寄存和托运等服务设施，按照车辆核定载客限额售票，并采取措施防止携带危险品的人员进站乘车。  **第四十二条**　道路货物运输站（场）经营者应当按照国务院交通主管部门规定的业务操作规程装卸、储存、保管货物。  **第四十三条**　机动车维修经营者应当按照国家有关技术规范对机动车进行维修，保证维修质量，不得使用假冒伪劣配件维修机动车。  　 机动车维修经营者应当公布机动车维修工时定额和收费标准，合理收取费用。  **第四十四条**　机动车维修经营者对机动车进行二级维护、总成修理或者整车修理的，应当进行维修质量检验。检验合格的，维修质量检验人员应当签发机动车维修合格证。  　 机动车维修实行质量保证期制度。质量保证期内因维修质量原因造成机动车无法正常使用的，机动车维修经营者应当无偿返修。  　 机动车维修质量保证期制度的具体办法，由国务院交通主管部门制定。  **第四十五条**　机动车维修经营者不得承修已报废的机动车，不得擅自改装机动车。  **第四十六条**　机动车驾驶员培训机构应当按照国务院交通主管部门规定的教学大纲进行培训，确保培训质量。培训结业的，应当向参加培训的人员颁发培训结业证书。    **第四章　国际道路运输**  **第四十七条**　国务院交通主管部门应当及时向社会公布中国政府与有关国家政府签署的双边或者多边道路运输协定确定的国际道路运输线路。  **第四十八条**　申请从事国际道路运输经营的，应当具备下列条件：  　 （一）依照本条例第十条、第二十五条规定取得道路运输经营许可证的企业法人；  　 （二）在国内从事道路运输经营满3年，且未发生重大以上道路交通责任事故。  **第四十九条**　申请从事国际道路运输的，应当向省、自治区、直辖市道路运输管理机构提出申请并提交符合本条例第四十九条规定条件的相关材料。省、自治区、直辖市道路运输管理机构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审查完毕，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予以批准的，应当向国务院交通主管部门备案；不予批准的，应当向当事人说明理由。  　 国际道路运输经营者应当持批准文件依法向有关部门办理相关手续。  **第五十条**中国国际道路运输经营者应当在其投入运输车辆的显著位置，标明中国国籍识别标志。  　 外国国际道路运输经营者的车辆在中国境内运输，应当标明本国国籍识别标志，并按照规定的运输线路行驶；不得擅自改变运输线路，不得从事起止地都在中国境内的道路运输经营。  **第五十一条**　在口岸设立的国际道路运输管理机构应当加强对出入口岸的国际道路运输的监督管理。  **第五十二条**　外国国际道路运输经营者经国务院交通主管部门批准，可以依法在中国境内设立常驻代表机构。常驻代表机构不得从事经营活动。    **第五章　执法监督**  **第五十三条**　县级以上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应当加强对道路运输管理机构实施道路运输管理工作的指导监督。  **第五十四条**　道路运输管理机构应当加强执法队伍建设，提高其工作人员的法制、业务素质。  　 道路运输管理机构的工作人员应当接受法制和道路运输管理业务培训、考核，考核不合格的，不得上岗执行职务。  **第五十五条**　上级道路运输管理机构应当对下级道路运输管理机构的执法活动进行监督。  　 道路运输管理机构应当建立健全内部监督制度，对其工作人员执法情况进行监督检查。  **第五十六条**　道路运输管理机构及其工作人员执行职务时，应当自觉接受社会和公民的监督。  **第五十七条**　道路运输管理机构应当建立道路运输举报制度，公开举报电话号码、通信地址或者电子邮件信箱。  　 任何单位和个人都有权对道路运输管理机构的工作人员滥用职权、徇私舞弊的行为进行举报。交通主管部门、道路运输管理机构及其他有关部门收到举报后，应当依法及时查处。  **第五十八条**　道路运输管理机构的工作人员应当严格按照职责权限和程序进行监督检查，不得乱设卡、乱收费、乱罚款。  　 道路运输管理机构的工作人员应当重点在道路运输及相关业务经营场所、客货集散地进行监督检查。  　 道路运输管理机构的工作人员在公路路口进行监督检查时，不得随意拦截正常行驶的道路运输车辆。  **第五十九条**　道路运输管理机构的工作人员实施监督检查时，应当有2名以上人员参加，并向当事人出示执法证件。  **第六十条**　道路运输管理机构的工作人员实施监督检查时，可以向有关单位和个人了解情况，查阅、复制有关资料。但是，应当保守被调查单位和个人的商业秘密。  　 被监督检查的单位和个人应当接受依法实施的监督检查，如实提供有关资料或者情况。  **第六十一条**　道路运输管理机构的工作人员在实施道路运输监督检查过程中，发现车辆超载行为的，应当立即予以制止，并采取相应措施安排旅客改乘或者强制卸货。  **第六十二条**　道路运输管理机构的工作人员在实施道路运输监督检查过程中，对没有车辆营运证又无法当场提供其他有效证明的车辆予以暂扣的，应当妥善保管，不得使用，不得收取或者变相收取保管费用。    **第六章　法律责任**  **第六十三条**　违反本条例的规定，未取得道路运输经营许可，擅自从事道路运输经营的，由县级以上道路运输管理机构责令停止经营；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处违法所得2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2万元的，处3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六十四条**　不符合本条例第九条、第二十三条规定条件的人员驾驶道路运输经营车辆的，由县级以上道路运输管理机构责令改正，处200元以上2000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六十五条**　违反本条例的规定，未经许可擅自从事道路运输站（场）经营、机动车维修经营、机动车驾驶员培训的，由县级以上道路运输管理机构责令停止经营；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处违法所得2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万元的，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六十六条**　违反本条例的规定，客运经营者、货运经营者、道路运输相关业务经营者非法转让、出租道路运输许可证件的，由县级以上道路运输管理机构责令停止违法行为，收缴有关证件，处2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第六十七条**　违反本条例的规定，客运经营者、危险货物运输经营者未按规定投保承运人责任险的，由县级以上道路运输管理机构责令限期投保；拒不投保的，由原许可机关吊销道路运输经营许可证。  **第六十八条**　违反本条例的规定，客运经营者、货运经营者不按照规定携带车辆营运证的，由县级以上道路运输管理机构责令改正，处警告或者20元以上200元以下的罚款。  **第六十九条**　违反本条例的规定，客运经营者、货运经营者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道路运输管理机构责令改正，处1000元以上3000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原许可机关吊销道路运输经营许可证：  　 （一）不按批准的客运站点停靠或者不按规定的线路、公布的班次行驶的；  　 （二）强行招揽旅客、货物的；  　 （三）在旅客运输途中擅自变更运输车辆或者将旅客移交他人运输的；  　 （四）未报告原许可机关，擅自终止客运经营的；  　 （五）没有采取必要措施防止货物脱落、扬撒等的。  **第七十条**　违反本条例的规定，客运经营者、货运经营者不按规定维护和检测运输车辆的，由县级以上道路运输管理机构责令改正，处10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  　 违反本条例的规定，客运经营者、货运经营者擅自改装已取得车辆营运证的车辆的，由县级以上道路运输管理机构责令改正，处5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  **第七十一条**　违反本条例的规定，道路运输站（场）经营者允许无证经营的车辆进站从事经营活动以及超载车辆、未经安全检查的车辆出站或者无正当理由拒绝道路运输车辆进站从事经营活动的，由县级以上道路运输管理机构责令改正，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的罚款。  　 违反本条例的规定，道路运输站（场）经营者擅自改变道路运输站（场）的用途和服务功能，或者不公布运输线路、起止经停站点、运输班次、始发时间、票价的，由县级以上道路运输管理机构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3000元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第七十二条**　违反本条例的规定，机动车维修经营者使用假冒伪劣配件维修机动车，承修已报废的机动车或者擅自改装机动车的，由县级以上道路运输管理机构责令改正；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处违法所得2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万元的，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没收假冒伪劣配件及报废车辆；情节严重的，由原许可机关吊销其经营许可；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七十三条**　违反本条例的规定，机动车维修经营者签发虚假的机动车维修合格证，由县级以上道路运输管理机构责令改正；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处违法所得2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3000元的，处5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原许可机关吊销其经营许可；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七十四条**　违反本条例的规定，机动车驾驶员培训机构不严格按照规定进行培训或者在培训结业证书发放时弄虚作假的，由县级以上道路运输管理机构责令改正；拒不改正的，由原许可机关吊销其经营许可。  **第七十五条**　违反本条例的规定，外国国际道路运输经营者未按照规定的线路运输，擅自从事中国境内道路运输或者未标明国籍识别标志的，由省、自治区、直辖市道路运输管理机构责令停止运输；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处违法所得2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万元的，处3万元以上6万元以下的罚款。  **第七十六条**　违反本条例的规定，道路运输管理机构的工作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不依照本条例规定的条件、程序和期限实施行政许可的；  　 （二）参与或者变相参与道路运输经营以及道路运输相关业务的；  　 （三）发现违法行为不及时查处的；  　 （四）违反规定拦截、检查正常行驶的道路运输车辆的；  　 （五）违法扣留运输车辆、车辆营运证的；  　 （六）索取、收受他人财物，或者谋取其他利益的；  　 （七）其他违法行为。    **第七章　附　则**  **第七十七条**　内地与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之间的道路运输，参照本条例的有关规定执行。  **第七十八条**　外商可以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采用中外合资、中外合作、独资形式投资有关的道路运输经营以及道路运输相关业务。  **第七十九条**　从事非经营性危险货物运输的，应当遵守本条例有关规定。  **第八十条**　道路运输管理机构依照本条例发放经营许可证件和车辆营运证，可以收取工本费。工本费的具体收费标准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财政部门、价格主管部门会同同级交通主管部门核定。  **第八十一条**　出租车客运和城市公共汽车客运的管理办法由国务院另行规定。  **第八十二条**　本条例自2004年7月1日起施行。 |